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

제정 2019.12.31

제1조 목적

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위원회의 구성

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

제3조 위원회의 회의

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 관리 하지 않는다.

제4조 심의사항

1. 위원회는 협력사 등록/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.
2. 위원회는 협력사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한다.
3.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사전 시정조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임직원 제재
4.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5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6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7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등

제5조 의견청취

위원회는 필요 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의결

심의위원회는 위원 2/3이상의 출석, 출석 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7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

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